



11 총회교육진흥위원회 보고

제103회기 총회교육진흥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옥성석
서 기 김미열

1. 조직

- 위 원 장 : 옥성석
- 회 계 : 김한성
- 위 원 : 박성규 정명철 이윤남 김성천 정병갑
- 서 기 : 김미열
- 총 무 : 김광석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18. 11. 6(화) 10: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 옥성석 목사, 서 기 : 김미열 목사, 회 계 : 김한성 목사, 총 무 : 김광석 목사

(2) 제2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19. 4. 1(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위원회 서기 김미열 목사가 총회산하기관으로 '교육진흥원' 설치안을 보고 하니 그대로 받고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 ② 교육진흥원 정관안을 서기가 준비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검토케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3) 제3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19. 5. 30(목)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가. 위원회 서기 김미열 목사가 총회산하기관으로 '교육진흥원' 설치안을 보고 하니 그대로 받고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나. 교육진흥원 정관안을 서기가 준비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검토케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② 서기가 교육진흥원 정관안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은 임원회에 맡겨 정리하기로 하다.
- ③ 교육진흥위원회 임원들이 김종준 부총회장님을 면담하여 총회산하기관으로 청원할 교육진흥원 설치안 및 정관에 관하여 나누기로 하다.

2) 임원회의

(1) 임원회의

☞ 일 시 : 2019. 6. 5(수) 10:00

☞ 장 소 :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 결의사항

- ①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님의 총회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비전을 듣고 총회교육진흥원을 총회교육연구개발을 위한 총회산하 독립 전문기관으로 설립 청원을 제104회기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총회 신앙교육연구개발 전담기관 “총회교육진흥원” 설립 및 정관 허락청원

총회교육진흥위원회는 총회의 신앙교육연구개발과 특별히 다음세대부흥을 위한 신앙교육연구개발과 시행을 전담하도록 총회 산하 기관으로 가칭 “총회교육진흥원” 설립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가칭) 총회교육진흥원 설립 청원취지 1부
2. 가칭) 총회교육진흥원 정관 1부. 끝.

2019년 9월

총 회 교 육 진 흥 위 원 회

위원장 옥 성 석

서 기 김 미 열

첨부 1.

총회교육진흥원 설립 청원취지

본 위원회는 제103회 총회에서 백년대계의 총회교육을 위하여 총회교육진흥원을 준비하도록 위임받고 현재의 총회교육 특별히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총회산하 교육전담기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가칭 “총회교육진흥원” 설립 허락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교육진흥원(개발원)은 제86회기 총회 결의로 총회교육의 개혁과 질적 발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독립적인 전문연구기관으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교육진흥원 또는 교육개발원 이름으로 총회교육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조직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독립성, 전문성,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회교육의 백년대계, 특별히 다음세대 신앙교육(주일학교)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정연구와 정책개발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총회교육진흥원이 총회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명실상부한 총회교육연구기관으로, 다음세대의 신앙교육과 부흥을 위한 교육연구 및 시행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게 해야 합니다.

총회산하기관으로 총회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평생신앙교육관점에서 총회의 교육정책과 교육커리큘럼이 연구 개발되고 그것에 따른 지역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신앙교육교재와 주일학교공과 개발과 보급 그리고 교육시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총회교육진흥원 권역별교육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교단의 미래인 다음세대 부흥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게 됨으로서 우리 교단이 주일학교교육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총회교육의 진흥을 통하여 교단 산하 교회의 부흥과 교단의 미래인 다음세대(주일학교)의 부흥을 보도록 제104회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총회산하기관으로 총회교육진흥원의 설립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 회 교 육 진 흥 위 원 회
위원장 옥 성 석



첨부 2.

총회교육진흥원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진흥원(약칭 교육진흥원)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Education & Development Institute of GAPCK(약칭 EDI) 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산하 기관이다.

제3조(위치) 본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본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결의와 총회(또는 총회실행위원회) 인준으로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목적) 본원은 총회교육을 통전적으로 연구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입각한 장로교 신앙과 삶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일과 성경의 모범을 따라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별히 다음세대 신앙교육과 주일학교 부흥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제5조(사업) 본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총회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수립
2. 공과 연구 개발(연령별, 계절별, 특수별, 통합형)
3. 다양한 신앙교육교재의 연구 개발
4. 공과 및 신앙교육교재 사용을 위한 실제적 교사교육
5. 교육목회 계획과 시행 지침서 연구 개발
6. 각종 연구 교재의 시범교회 및 시범 주일학교 지정 및 운영
7. 지역별 권역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 다음세대(주일학교) 부흥운동

제2장 이사회와 감사

제6조(이사회회의 구성)

1.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7조(이사 및 임원의 선임)

1. 이사는 총회에서 파송된 자로 선임한다.
2. 이사회 임원은 9월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이사 및 임원의 보선)

1.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나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파송한 자로 선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은 보선하지 않는다.
2. 이사회 임원의 유고 시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이사회 임원) 이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서기 1인

제10조(이사 및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각각 임기의 개시는 9월 정기 이사회로 한다.
2. 보선된 이어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이사는 별도로 규정된 이사회비를 내야 하며 이사회비(이사부담금)를 입금하지 않을 시 이사자격이 정지되고 이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를 관장한다.
2. 서기는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제12조(이사의 직무)

1.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으로 제출된 본원의 주요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2.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및 소집 절차)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2회(2, 9월 첫 주 월요일)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9월 이사회는 정기총회로 모인다.
3.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③ 운영상 필요에 의해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제14조(심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재정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원장이나 각 팀의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6. 원장의 특별 요청 사항
7. 이사, 자문위원, 전문위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15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2. 본 정관이나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일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 임원 및 원장의 선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감사)

1. 총회 감사부의 감사를 받는다.
2. 본원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받는다.
3. 이사회는 총회감사부에 요청하여 감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전문, 자문, 운영)

제17조(전문위원회)

1. 18명 이하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교육전문 목회자와 교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각종 연구 개발에 참여한다.
3. 전문위원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원장의 요청이나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5. 목회자 전문위원은 위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1. 18명 이하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교육목회에 헌신하는 지역 목회자들로 구성한다.



3. 다양한 신앙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자문한다.
4. 자문위원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원장의 요청이나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6. 자문위원은 위원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1. 원장, 전문위원장, 자문위원장 및 팀장 3인, 총회교육부장 1인 총 7인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이사회에서 결의된 연간 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한다.
4. 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운영전반에 관련하여 의논한다.

제4장 팀과 부서조직 및 직원

제20조(팀과 부서조직) 본원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기획연구팀
 - ① 교육정책연구부(총회교육정책 및 교육진흥원 연구총괄기획, 총회 각 상비부의 교육관련 정책 연구제안)
 - ② 교육과정연구부(교재연구를 위한 교육과정 연구 및 개정, 교회 상황에 맞는 다양한 목회교육 과정 개발)
2. 교재연구팀
 - ① 유아교재연구부(영아, 유아, 유치)
 - ② 아동교재연구부(유년, 초등)
 - ③ 청소년교재연구부(중등, 고등)
 - ④ 장년교재연구부(청년, 장년, 노년)
3. 지원실행팀
 - ① 교육행정지원부(본원행정, 각종 연구세미나 시행, 해외출판사 신앙교육교재 관련 업무)
 - ② 교재편집지원부(교재편집지원, 교육영상제작, 교재디자인지원, 총회교육닷컴 운영)
 - ③ 교육진흥센터부(권역교육진흥센터 개발 관리운영, 다음세대부흥운동 총괄)

제21조(직원)

1. 본원의 직원은 개혁신학에 입각한 영성 있는 신앙인으로서 각 팀과 부서와 관련된 기독교교육 특히 교회교육의 전문성과 인품을 구비한 자로 한다.
2. 팀장은 각 팀의 부장들 중의 탁월한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임용한다.
3. 교재교육연구팀의 각 부장(전임연구원)은 박사급으로 임용한다.
4. 지원실행팀장은 박사급의 교육행정전문가(전임연구원)로 한다.
5. 각 팀에서 필요한 실무전문 직원 및 연구원을 임용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원장)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위임된 팀과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원장은 본원의 목적 사업의 연구 및 운영에 탁월한 교육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여 총회(또는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중임은 이사회의 신임만으로 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한다.
4. 원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육진흥 사업에 관한 보고 및 심의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면한다.

제24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권역교육진흥센터

제25조(센터 목적) 총회교육 특별히 총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 계획들이 교단의 전국교회들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센터 이름은 지역이름을 넣어 <총회(지역이름)교육진흥센터>라 칭한다.

제26조(센터 조직)

1. 각 권역의 대표가 될 만한 교회의 목회자 동시에 주일학교교육에 관심 있는 목회자를 센터장으로 그리고 그 교회를 핵심교회로 세운다.
2. 센터운영 디렉터는 기본적으로 핵심교회의 부목사 또는 교육전도사로 한다.
3. 점차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 그리고 교사들이 참여하는 센터 모임으로 발전시킨다.
4. 최소한으로 시작하여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센터가 되게 한다.
5. 각 교회의 주일학교 각 부서의 부장들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게 한다.
6. 총회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권역교육진흥센터 영역을 만들어 놓는다.
7. 권역교육진흥센터 분류 및 시행계획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27조(주요사역)

1. 주일학교 설립과 다음세대 부흥운동의 전개
2. 총회공과 보급과 지원
3. 연합주일학교 운영 지원
4. 총회 공과 및 교재의 사용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사훈련 지원
5. 지역교회연합 및 권역 주일학교들의 연합행사 시행
6. 총회교육의 연구 시범 교회와 주일학교 지정 및 운영하기
7. 지역별 세밀한 시행사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8조(경비) 본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총회전입금, 이사 및 전문위원과 자문위원들의 회비, 헌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말까지로 한다.

제30조(회계감사)

1. 본원의 회계에 관해서는 매년 총회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총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총회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이사장과 총회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2. 본원의 모든 회계 관련 기록은 이사회가 요청하거나 총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열람에 응해야 한다.

제31조(예산과 결산)

1. 본원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에 의해 이를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본원의 결산은 매년 9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도 이를 보고한다.



제7장 정관과 내규의 개정 및 제정

제32조(정관의 개정)

1. 정관 개정안 발의는 이사회 회원 2/3 출석에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한다.
2. 결정된 개정안은 본 교단 총회에 상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확정된다.

제33조(내규의 제정 및 개정)

1. 본원의 운영을 위한 내규는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을 결정한다.
2. 내규의 개정, 발의 및 개정안 작성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지명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다.

제8장 정족수 및 결의 위임

제34조(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1. 본원의 모든 회의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 해임은 이사회 회원 2/3 출석에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내규의 제정과 개정, 임원, 위원, 원장 선임 등 일반 사항은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5조(결의 위임) 이사, 임원, 위원 등이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결의 위임 할 수 있으며, 결의 위임 내용은 특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교단 총회 결의와 동시에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정관이 확정된 후에 구성되는 최초의 이사회는 총회임원회가 교단 총회 파회 후 2개월 이내에 그 구성을 결정하여 발표 한다(단, 총회임원회에서 다룰 최초이사 구성안과 최초 이사회에서 다룰 원장, 각 위원, 진흥원 직원 구성안은 교육진흥위원회가 마지막 과업으로 조직 제안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최초 이사회에 인준 결의한다).

제3조 본원의 해산은 본원 정관 제27조, 정관개정 절차에 준하며 본 교단 총회 결의로 확정되고, 잔여 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